

예산총칙

200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3,166,450	9,394,994
일반회계	240,198,860	7,205,966
특별회계	72,967,590	2,189,028
공기업특별회계	7,615,159	228,455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7,615,159	228,455
기타특별회계	65,352,431	1,960,57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87,118	86,61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91,836	14,755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84,465	26,534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3,564,746	706,94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411,388	282,34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460,700	343,821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098,000	62,94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3,928,487	417,855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510,160	15,305
기반시설특별회계	115,531	3,466

제 2 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략"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생략"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40,09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